

소 장

원 고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 종 현, 박 주 현, 김 진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김 정 길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서승연에게는 금 5,000,000원, 원고 김지수· 강정환에게는 각 금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원고들은 모두 1급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만 20세 이상으로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 4. 13. 행해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는 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거나(원고 김지수) 아예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나머지 원고들 7명)이고, 피고는 헌법, 선거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시설촉진에관한 법률 등 법령에 의해 모든 국민의 참정권 및 장애인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국가입니다.

2. 원고들이 4. 13 총선 당시의 상황

가. 원고 000

위 원고는 지체 1급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투표권을 한번도 포기해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2000. 4. 13. 도 원고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과 함께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향했으나, 투표소는 2층에 마련되어 있고 23개나 되는 가파른 계단이 놓여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휠체어를 탄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려면 적어도 3~4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원고의 아버지가 2층으로 올라가 선관위 측에 배치된 공익요원이나 도우미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올라갔으나, 선관위 측 사람은 “내년에 투표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투표소를 들판에 설치해야겠네”라며 원고의 아버지에게 말할 뿐 1층으로 내려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원고는 투표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크게 분개하였고,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방경찰청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갑 제1호증의 1 고소·고발장, 갑 제1호증의 2, 3 각 신문기사 참조).

나. 원고 ○○○

위 원고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으로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여 혼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 1 장애인수첩). 같은 4. 13. 투표일 아침, 원고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소를 향해 집을 나섰으나, 막상 투표장에 도착하자 투표소는 10개 가량의 계단 위에 설치되어 있어 실망감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으나, 돌아가면서 생각을 바꿔 다시 투표소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5분 정도를 기다리다가 겨우 다른 투표자들의 도움을 받아 올라가 투표를 마칠 수 있었으나, 투표소에서 내려올 때에도 “몇 분이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여 겨우 2사람의 선관위 직원의 도움을 받았으나 그 사람들도 “이거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올라왔어요”라고 말하여 원고에게 모멸감을 안겨 주었습니다(갑 제2호증의 2 진술서 참조).

다. 원고 ○○○

위 원고는 선천성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사용하며 혼자서는 이동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갑 제3호증의 1 장애인 수첩). 위 원고는 이번 4. 13. 총선에서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통·반장 등의 확인서와 도장을 받아와야 한다”고 하면서, 그나마 이 확인서도 투표일 15일 전에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조건들로 인하여 부재자투표 신청을 포기해야 했고 직접 투표를 하러 가려 했으나, ○○○학교에 설치된 투표소 위치 때문에 투표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난 투표 때에도 ○○○학교에서 투표를 하

다가 계단이 많아 힘들게 투표를 마친 원고로서는 도우미가 따로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표소로의 이동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갑 제3호증의 2 진술서).

라. 원고 000·000·000·000·000

위 원고들은 모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모두 4. 13. 총선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투표소에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고 턱이 있어 휠체어로는 이동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갑 제4호증 각 장애인 수첩, 갑 제5호증 각 진술서). 이들은 2년 전 투표 때 이미 도우미 한 사람 없는 투표소에서 주민들의 도움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거나(원고 000),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인데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일터로 나가고 집이 3층이어서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원고 000·000·000·000).

3. 장애인의 투표행위 관련 법령 규정

장애인들의 투표행위와 관련된 법령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제24조 [선거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34조 [사회보장 등]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선거권] ①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제38조 [부재자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내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구·시·읍·면의 장애인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무료로 한다.

4.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장애인 복지법

제21조 [편의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원고들의 선거권을 침해한 공무원의 위법행위

가. 장애인에 대한 부재자투표 (거소 투표) 제도의 미비

원고들과 같은 중증의 장애인들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원고들 중 대부분이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를 알고 시도했던 원고 강정환의 경우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려 했지만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절차를 요구하고 시간의 제한도 있어 거소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이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서류를 접수해

야 하는데, 종종 장애인들이 다른 부재자 투표 해당자들과 다른 점은, 부재자투표를 위한 절차마저도 혼자서는 취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특히 원고들 중 000,000는 혼자 거주하고 있고 원고 000는 60이 넘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부재자 투표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고 그나마 그 절차를 알고 있는 사람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이러한 종종 장애인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적절한 홍보를 통해 부재자투표(거소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애인들을 파악하여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등록 장애인(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등록명부를 두고 장애인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가 추산하는 전체 장애인 105만여명 중 80만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에 대해서는 사전에 거소투표에 대한 안내와 신청절차에의 도움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나. 투표소 설치에 있어서의 배려 부족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갑 제6호증 각 1996년 신문기사) 투표소 설치에 있어서의 배려는 거의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1층 이외의 투표소 설치 비율은 이번 총선에서도 17.0%에 이르고(전체 13,780개 투표소 중 2,332개소)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275개 중 537개로서 23%를 넘습니다(갑 제7호증 투표소 시설별 현황, 갑 제8호증 각 신문기사 참조). 원고들의 투표구 들 중 원고 0000,000(3층),000의 투표소가 모두 1층이 아니었고 1층이라고 하여도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위 갑 제2호증의 2 원고 000의 진술서 참조 ; 원고들은 이후 변론 과정에서 투표소의 현황을 사진으로 현출하여 이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까).

다. 장애인을 위한 안내요원의 배치·편의시설 마련조치 등의 불이행

투표소 설치 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 설치하는 완만한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나 안내도우미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국 13,780개의 투표소 중 승강기나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 곳은 62곳에 불과하고 계단 대신 장애인용 통로가 있는 곳도 2,094곳에 불과합니다(이나마 선관위의 집계라 정확하지 못한 면이 많습니다).

원고 000·000가 찾아간 투표소에 장애인 통로나 안내도우미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원고 000의 경우에는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최소한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라. 선관위의 임무 해태

선관위가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투표를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은 언론에 의해서도 누차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을 뿐 아니라(위 갑 제8호증 참조) 장애인 운동단체들의 공문에 대해서도 1991년이나 1997년이나 2000년,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투표소를 1층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하고 있는 등(갑 제9호증 각 회신)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총선이 끝난 후 『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가 중앙선관위에 대해 “장애인 유권자수, 투표한 장애인, 거소투표 장애인, 장애인 투표율”에 관하여 자료요청을 하자, 중앙선관위는 “장애인 투표율에 관한 자료는 우리위원회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에 관한 자료와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갑 제10호증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문제점의 파악과 대책의 마련이 현황 파악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장애인 투표율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집계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5. 원고들의 참정권 침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의 유일한 참정권의 행사 기회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선거주관 부서인 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 선거권 보장 의무의 해태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헌법 제24조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장되는 참정권을 침해당하였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소외감으로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 및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로서는 이를 정신적으로나마 위자해야 할 것인바, 그 금액은 ① 투표소까지 갔다가 선관위 직원들의 협조 거부로 투표를 포기해야 했던 원고 에게는 적어도 금 5,000,000원, ② 투표를 실시했으나 편의시설 미비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원고 에게는 적어도 금 3,000,000원, ③ 거소투표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절차에 대한 보완책 미비로 포기해야 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원고 에게는 적어도 금 3,000,000원을, 그리고 ④ 거소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및 투표소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하여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나머지 원고들은 적어도 금 2,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6. 결 론

1993. 6. 25.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는 “세계대회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보편적이며 따라서 따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명과 복지, 교육과 노동, 독립적인 삶과 사회 모든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대하여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 차별이나 기타 소극적인 차별적 처우도 그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세계대회는 각국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이들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접근(right to access)을 보장해 줄 입법을 채택하거나 체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고, 1996. 7.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보장과 함께 장애우의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장애인들의 투표소에의 접근권을 주장하며 다양한 운동들이 행해졌으나 여전히 20%에 가까운 투표소가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되어 원고들과 같은 중증 장애인들은 이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참정권의 행사로 인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직분을 다하는 최소한의 존엄성 실현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건강치 못한 신체에서 오는 소외감과 슬픔을 한층 더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지국가에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국가의 의무가 되는 것이고, 우리 법은 이를 구체화하여 편의시설 제공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1호증의 1	고소· 고발장
2, 3	각 신문기사
갑 제2호증의 1	장애인 수첩 (000)
2	진술서 (000)
갑 제3호증의 1	장애인 수첩 (000)

2	진술서 (000)
갑 제4호증의 1내지5	각 장애인 수첩 (원고 4 내지 8)
갑 제5호증의 1내지5	각 진술서 (원고 4 내지 8)
갑 제6호증의 1내지3	각 1996년 신문기사
갑 제7호증	투표소 시설별 현황
갑 제8호증의 1, 2	각 신문기사 (2000년 선거 직전)
갑 제9호증의 1	질의회신 (1991년)
2	질의회신 (1997년)
3	질의회신 (2000년)
갑 제10호증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기타의 입증방법은 이후 변론절차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분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00 . 6.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 종 현

담당변호사 박 주 현

담당변호사 김 진

서울지방법원 귀중

별제 제2목록

원고들의 장애정도 및 투표소

번호	이름	장애유형	장애등급	투표장소
1	000	지체장애	1급	
2	000	지체장애	1급	
3	000	지체장애	1급	
4	000	지체장애(양하지)	1급	
5	000	지체장애(뇌성마비)	1급	
6	000	지체장애(팔·다리)	2급	
7	000	지체장애(뇌성마비)	1급	
8	000	지체장애(사지부전)	1급	